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20350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20350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5370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유장미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김용일, 김경석, 문정현, 한상종, 김옥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태

변론 종결 2021. 4. 7.

판결 선고 2021. 5.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5370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전남 해남군 L 임야 54,347m²에 관하여 2019.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19. 4. 3. 접수 제84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이하 'A', 'B'라고만 한다)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인용 부분의 '피고 회사'를 'A'로, '피고 B'를 'B'로, '피고 C'을 '피고'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4면 7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남 해남군 L 임야 54,347m²'로 고친다.

○ 4면 14, 15행의 '답뽕'을 '답변'으로 고친다.

○ 5면 14행부터 6면 6행까지 부분[제3의 가. 2)항]의 '피고 C'을 'B'로 모두 고친다.

○ 8면 14행부터 9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A의 영업 계속을 위해서는 화물운수업자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운송계약 유지가 불가결하여 그 대표자인 피고의 신용을 얻고자 K에 대한 미지급 운송비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다. 이 때문에 A는 2019. 4.까지 K와 물품운송거래를 할 수 있었고, 2019. 5. 초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A의 영업권과 직원, 재고, 거래처 등을 양수함으로써 A를 승계한 후 K와 운송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A와 그 승계자인 M의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①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은 2017. 4.경 A와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여 2017. 4. 23.부터 2019. 3. 31.까지 물품운송을 사실, M이 2019. 4.부터 K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우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변제 이후 2019. 4. 30.경까지 A와 물품운송거래를 하였다거나 M이 A의营业을 양수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A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의 계속성 유지나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피고는, K과 A의 실제 물품운송거래는 2019. 4. 30.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을다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K과 M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나아가 M이 A의 营业을 양수하였더라도 A의 원고에 대한 채무까지도 승계하였다거나 M이 A에 营业양수대금을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A의 채무까지도 부담한다거나 M의 营业 수익이 A에게 바로 귀속하여 원고에 대한 A의 채무 자금이 조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M의 A에 대한 营业양수 및 그에 따른 사업

계속 여부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㉔ 더욱이 A나 M이 K와 물품운송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영업상 수익이 A의 기존 부채에 대한 변제력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

○ 10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A와 K의 거래 기간, K의 운송비 지급 내역 및 지체 상황, 피고의 독촉과 그에 대한 B의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적어도 2019. 3.경부터는 A와 B의 자금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11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K의 운송료 채권은 A와 거래에서 발생한 회사 간 채권임에도 피고 개인이 K로부터 운송료 채권을 양수받아 K의 대표자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는 기존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1면 2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④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선의라는 근거로 M이 A의 영업을 양수하여 A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K이 M과 물품운송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인 2019. 4. 초경에는 K이 A와 물품운송거래를 하였고, M과는 2019. 5.경에서야 그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K이 M과 물품운송거래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배용준

판사정승규

판사김동완